

문서번호 : 예스코 제2024-0151

2024. 03. 18.

수 신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참 조 : 건설부,토목부,건축부,시설부

제 목 : 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2. 당사는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야 24 시간 굴착공사 임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최고의 서비스와 최상의 안전확보를 통해 고객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귀 본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굴착공사 시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업무협조 사항

- 1) 굴착공사 정보제공 : 공사 전 반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굴착기간, 굴착담당자 정보를 **공사시작 24 시간 전까지 제공.(평일기준)**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 30 조의 3 제 1 항]
※ 주의 : 주말 및 공휴일은 정보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월요일 공사 시 24 시간 전 금요일까지 정보제공
☞ 정보제공 방법 : **유선 1644-0001 또는 인터넷 www.eocs.or.kr 으로 접수**
- 2) **당일굴착공사 접수불가** : 긴급복구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당일접수가 불가함.

나. **미신고 굴착공사 발견 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 행정조치가 일괄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굴착공사 시행 전에 반드시 상기 연락처로 접수 후 당사 안전관리 전담자와 협의 과정을 거쳐 굴착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미신고로 인한 행정조치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50조 8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 : 1) 도시가스 사업법 관련 법규 ----- 1부
2) 미신고 굴착 공사자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 --- 1부 끝.

주식회사 예 스 코
대표이사 김 환



□ 발송: 서부안전팀 □담당자: 김 옥 현 □연락처: 02-2210-7418 □상황실:080-010-0019

[도시가스 사업법 관련 법규]

제 30 조의 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 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07.12.21]

제 30 조의 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 1 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 2 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 48 조(벌칙) <개정 2007.12.21.>

-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⑨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제 50 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1.7.25., 2014.1.21.>

8. 제 30 조의 3 제 1 항(제 39 조의 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11. 제 30 조의 5 제 2 항(제 39 조의 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간에 **협의를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3. 제 30 조의 6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 51 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8.13., 2014.1.21.>

11. 제 30 조의 3 제 5 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별표 16] <개정 2014.10.07.>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요약)

(제 52 조의 2, 제 54 조제 1 항제 6 호, 제 58 조 및 제 58 조의 2 제 1 항제 4 호 관련)

다. 굴착공사 종류별 작업방법

1) 파일박기 및 빼기작업

- 가) **공사착공 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현장 협의를** 통하여 공사 장소, 공사 기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서로 확인할 것
- 나) **도시가스배관과 수평 최단거리 2m 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 아래 시험굴착으로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것**
- 다)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파악한 경우에는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 라) **도시가스배관과 수평거리 30 cm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하지 말 것**

마) 향타기는 도시가스배관과 수평거리가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수평거리 2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바)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2) 그라우팅·보링작업

가) 1)의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그라우팅·보링작업”으로 본다.

나) 시험굴착을 통하여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한 후 보링비트가 도시가스배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파이프를 사용하여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터파기·되메우기 및 포장작업

가) 1)의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터파기”로 본다.

나) 도시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도시가스배관의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할 것

다) 도시가스배관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로서 주위에 도시가스배관의 부속시설물(밸브, 수취기,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 등)이 있을 때에는 작업으로 인한 이탈 그 밖에 손상방지에 주의할 것

라)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경우 배관의 코팅부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코팅부가 손상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를 한 후 작업을 진행할 것

마) 도시가스배관 주위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아래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실시할 것

바) 도시가스배관 주위에서 다른 매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30cm 이상 이격할 것

사) 도시가스배관 주위를 되메우기 하거나 포장할 경우 배관주위의 모래 채우기, 보호판·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및 도시가스배관 부속시설물의 설치 등은 굴착 전과 같은 상태가 되도록 할 것

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나중에 도시가스배관의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스안전 글로벌 TOP 전문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발 음 받는곳 창조

상 조

제 목 미신고 무단 굴착공사자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 안내

1. 귀 시(공사)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미신고 무단 굴착공사 위반자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으로 행정조치 의뢰는 무단 굴착을 발견한 도시가스사업자 등 누구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참고하시어, 미신고 무단 굴착에 의한 타공사 사고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가스안전공사



발는곳 한국가스공사, 서울도시가스외 32개 도시가스시

부장 김진균

센터장

전결 08/03

형원홍

시행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711 (2016.08.03.) 접수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27-13 / www.kgs.or.kr

전화 02-2038-3982 전송 02-6944-5120 / kyong@kgs.or.kr /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사가 되었습니다.